

광주지방법원 2024. 11. 1 선고 2024가단6187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24. 10. 25.

판결 선고 2024. 11. 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4층 별지1 도면의 표시 ㄱ, ㄴ, ㄷ, ㄹ,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(가)부분 33.34㎡를 인도하고, 2023. 5. 20.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36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김한울

별지